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297711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29771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148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가단2782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성

담당변호사 박보준, 박순애, 민지희, 김진만, 이희준, 김혜림, 이서현,

민제홍, 한진희, 김성호, 안계상, 강리원, 김명훈, 임지윤

피고, 상고인 1. B 주식회사 (변경 전: E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창환, 한용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나51484 판결

판결선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제3호)을 의미하고,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호)를 의미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은 '방문판매자 등,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각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제9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 소비자, 재화의 의미, 청약철회 기간,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 제19조가 정한 피고 B 주식회사 면제특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숙연